

담당	책임자

외국환거래용 인감(서명)신고서

KEB하나은행 앞

상호	한 글(한문)			
	영 문			
	무역업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소	한 글			
	영 문			
거래용인감 (서 명)	대표자		대리인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사용할 본인 또는 대표자, 대리인의 인감(또는 서명)을 위와 같이 신고하며 위 인감(또는 서명)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신고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인감대조

주 소 :

1. 은행이 어음, 수표, 기타증서의 인영을 본인이 위에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수표, 기타증서와 도장에 관하여 위조, 변조, 도용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본인은 어음, 수표, 기타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 위에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이름, 대표자, 대리인 주소 등 거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곧 은행이 정한 서식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겠으며 이 신고가 있기 전에는 은행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3. 위의 인감신고에 사용한 도장에 관하여 분실, 멸실,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곧 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거래점에 신고하겠으며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 및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4. 위의 신고 이전의 사유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 및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